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74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이재관·이병진·소병훈

복기왕 • 박용갑 • 오세희

송재봉 • 박홍배 • 윤준병

강준현 · 고민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65조).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있으며,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임.

이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777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 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u>공</u>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u>공</u>		
<u>무원</u> 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	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가입할 수 없다.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		
	<u>다)</u>		
② <u>공무원</u> 은 선거에서 특정 정	②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		
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u>한다)</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